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 299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3. 9.

박 정 환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-

#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박정환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 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# □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병역법」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중인 달서구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,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# 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에서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을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, 보험기간, 보장 범위 등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에서는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.

####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,

-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####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

(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00923107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3. 9. 1.

발 의 자: 박정환, 권숙자, 고명옥, 김장관,  
이진환, 김정희, 황국주, 남현주,  
정순옥

## 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중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)
- 나.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지원 대상으로 함(안 제4조)
- 다.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, 보험기간, 보장범위 등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지원할 수 있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(안 제5조에서 안 제6조)
- 라. 구청장은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7조)
- 마.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함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제정조례안: 붙임 1
- 나. 관계법령: 붙임 2
- 다. 비용추계: 별첨

## 불임1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,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,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군복무 청년 상해보험”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.
- “청년”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-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(본인이 지원

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)

2. 「병역법」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
3. 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

제5조(지원내용)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, 보험기간, 보장 범위, 보장 금액,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홍보) 구청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평가) 구청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(이하 생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(이하 생략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

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 □ 병역법

**제16조(현역병입영)**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,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(軍)별·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.

- 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·군·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·군·구에서 입영하게 한다. 다만,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20조(현역병의 모집)**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·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.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·면접·필기·실기 등의 전

형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.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협의할 수 있다.

**제22조(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)**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.

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.

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추천에 의한 전환복무)**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.

1. 소방청장으로부터 「의무소방대설치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
2.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「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.

③ 경찰청장,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 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전시·사변에 준하는 사태
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

3.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 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.

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.

⑥ 경찰청장,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